# 참고 3

#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 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

구 분	중점 확인사항				
	○ (국외근로소득)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				
	비과세(원양어업 선박,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 원)				
	- 국외에서 인사,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 원				
	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(월 100만 원 비과세)				
	-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.				
	○ <b>(연구보조비) 연구기관</b> 등에서 <b>연구활동에 직접 종사</b> 하는 <b>직원이</b>				
	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				
	- 인사, 행정, 회계 등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				
	과세 적용대상이 아님.				
81	-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 교원에 준하는				
	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.				
과	○ (전공의 수련보조수당)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				
	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				
세	-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				
	않도록 주의				
	-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 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				
	○ (연장근로수당 등)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고				
	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,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·야간·휴일				
	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<b>연 240만 원</b> (광산·일용근로자 등은 전액)				
	까지 비과세				
	-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				
	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				
<b>T</b> 4 3/6'	│ │○ 청년, 60세 이상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<b>중소기업체</b> 에 취업│				
중소기업	하는 경우 <b>3년(5년)간 소득세의 70%(90%)를 감면(연 150만 원 한도)</b>				
취업자	- 병·의원, 금융·보험업,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.				
소득세	- 회장, 사장, 부사장, 이사장, 최대주주,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인 경우				
감면 	대표자), 최대주주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.				

구 분	중점 확인사항
인적 공제	<ul> <li>○ (기본공제) 본인,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</li> <li>○ (추가공제)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(100, 200)만 원</li> <li>-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) 초과 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</li> <li>-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,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</li> <li>-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.</li> </ul>
주택자금 공제	<ul> <li>○ (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) 무주택 세대주(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)가 국민주택규모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% 공제(한도 300만 원)</li> <li>-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(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)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.</li> <li>-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 불가</li> <li>○ (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)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 (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)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(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~1,800만 원 한도)</li> <li>-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.</li> <li>-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.</li> <li>- 12. 31.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.</li> </ul>
주택마련 저축공제	<ul> <li>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%를 공제(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)</li> <li>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.</li> </ul>
신용카드 소득공제	○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<b>총급여액의</b> 25%를 <b>초과</b> 하는 금액의 15%(30%, 40%)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-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-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.

구 분	중점 확인사항						
연금계좌 세액공제	○ 연금계좌(연금저축, 퇴직연금, 과학기술인공제)에 납입한 금액에 12%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,500만 원 이하는 15%) 공제 -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-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.						
보험료 세액공제	○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%(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%)를 공제받을 수 있음. -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. -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						
의료비 세액공제	<ul> <li>○ 기본공제대상자(소득·나이제한 없음)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% 초과 금액의 15%(난임시술비 20%)를 세액 공제</li> <li>─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.</li> <li>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(사내근로복지기금・보험회사・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)는 공제 불가</li> </ul>						
교육비 세액공제	○ 기본공제대상자(나이제한 없음)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%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 -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. -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불가 -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,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						
기부금 세액공제	<ul> <li>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제한 없음)가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기부금에 대해 15%(1천만 원 초과분 30%,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초과분 25%)를 세액공제(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)</li> <li>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.</li> <li>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기부금만 공제 가능함.</li> </ul>						
월 세 액 세액공제	<ul> <li>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(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)인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지급한 월세액(연 750만 원 한도)의 10%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자 12%)를 세액공제</li> <li>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.</li> <li>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(기본공제대상자 포함)와 임대차계약서 상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.</li> <li>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.</li> </ul>						

## 참고 4

## 주요 연말정산 문답자료(FAO)

※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와 개정된 세법과 관련한 연말정산 문답자료입니다.

(소득공제·세액공제 등 1 ~ 30)

-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(장안장모 포함)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-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,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(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과 나이요건 (60세 이상)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-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,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\* 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\* 공제요건: 상환기간 15년(10년) 이상, 기준시가 5억 원 이하,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,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
-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?
-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4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8년에 가입하였고 19. 6. 30.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?
  -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,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#### 5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?

-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다만,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%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,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%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.
- 6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?
-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,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 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·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구	분	특별세액공제	신용카드 공제		
의료비		의료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 공제 가능		
보장성 보험료		보험료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 공제 불가		
학원비	취학전 아동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	시오리도 코레 기노		
	그 외	교육비 세액공제 불가	신용카드 공제 가능		
교복 구입비		교육비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 공제 가능		
기부금		기부금 세액공제 가능	신용카드 공제 불가		

-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?
- 안됩니다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

- 8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- 예,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.
- 9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? (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)
  -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\*입니다.
    - \* 70만 원 = (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) 0 원 + (출산입양자녀) 셋째 자녀는 70만 원
- 10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?
  - 초·중·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(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)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,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.
- 11 어린이집의 입소료, 현장학습비,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  -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「영유아보육법」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(도서구입비 포함, 재료비 제외)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.
  - 따라서,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, 현장학습비,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-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  -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(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, 2월 포함)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, 초·중·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- 31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  -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.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,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14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?
-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.
  - \* (참고)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함(원천세과-267, 2012.05.15)
-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?
  -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합니다
- 16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?
  -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,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 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.(회사에 수령액만 제출)
- 17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  -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. 다만,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 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  - \* 홈택스(공인인증서 로그인) > My홈택스 >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

#### 18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?

-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다만,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※ 홈택스(공인인증서 로그인) > My홈택스 >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
-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(법인납세과)를 방문하시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19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?
  -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, 세무서(법인납세과)를 방문하시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?
  - 제출기한 1월 13일(또는 2월말)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,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21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,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?
  -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,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(2018년도에 등록 (재등록) 되어 2019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)

- 22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나요?
  -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
  - 단.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23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?
  -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,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.
- 상등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?
  -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.
- 2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?
  -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,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26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  -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다만,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\*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)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- \*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, 주택마련저축

-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.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  -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(기여금)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,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- \* (연금보험료 소득공제)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(연금계좌세액공제) 공제금액 한도: 700만 원, 공제율: 12%(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%) (연금저축계좌)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, 초과는 300만 원 한도
- 28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?
  -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. 이 때,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
- 29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?
  -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
  -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'입장료'의 범위는 무엇인가요? 30

- '입장료'는 박물관·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. 교육·체험프로그램\*에 참여 하기 위한 관람권,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,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.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.
  - \* 교육·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(1일권)만 인정

도서, 공연티켓 및 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,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1 무엇인가요?

-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「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」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,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\*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\*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,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
  - ※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
  -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사용분(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)의 '기타'란에 직접 기재

	《소득·세액공제신고서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》								
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									
T =	신용카드등 사용액								
자료 구분	신용카드	현금영수증	직불카드등	문화비사용분(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)	전통시장 사용분	대중교통 이용분	기부금		
국세청	4,700,000*1								
기타				300,000 <sup>*2</sup>					

\*1 : 5,000,000(신용카드 사용금액) - 300,000(구분되지 않은 문화비) = 4,700,000원

\*2 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지출 금액 = 300,000원

- 32 박물관·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?
 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·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"당일 입장하는 행위"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  - 따라서,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·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,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33 박물관·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인가요?
  - 박물관·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(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34 ~ 35)

- 34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·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?
  - 성년(만 19세 이상\*)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·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  - \* 2000. 12. 31. 이전 출생자
  -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35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으로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-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(공인인증서, 휴대폰, 신용카드 인증)을 하여 취소하거나, 팩스(1544-7020)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홈택스 ☞ 조회/발급 ⇒ 연말정산간소화 ⇒ 제공동의 취소 신청